

4월 임시국회,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

-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 2002년도 추곡수매가, 한·칠레 FTA 국회비준 동의안 등이 주요 농정현안으로 처리될 예정 -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고 이 기간동안 주요 농정현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은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2002년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안, 농어촌복지특별법, 한·칠레 FTA 국회비준 동의안,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 등이다.

1. 농가부채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현재,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은 위의 도표상 법개정과정 ②의 해당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 계류중이다.

농가부채특별법은 원철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박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복수 상정되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원철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업경영 개선자금을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는

입법 및 법개정과 정부정책 국회비준 과정>

※ 입법 또는 법개정 과정

- ① 국회 의안과에서 제정할 법률안 또는 개정안을 접수 → ②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가결 → ③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의 가결 → ④ 본회의 가결

※ 한·칠레 FTA와 추곡수매가 등 국회비준 과정

- ① 해당 정부부서에서 안건 마련 → ② 의안과에 안건 제출 → ③ 해당 상임에서 심의 가결 → ④ 국회 본회의 가결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박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장기 정책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자금의 금리를 1%로 인하(상호금융자금은 제외)하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이해구 의원을 대표로 발의하여 현행 '후계농업인'의 명칭을 '농업경영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 농어촌복지특별법 입법 청원

지난 2002년 10월 31일 박희태, 김영진, 원철희 의원을 대표 소개의원으로 한농연이 입법청원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법개정과정 ②의 해당상임위원회 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다.

3. 2002년 추곡수매가 국회 비준

현재 추곡수매가 국회 비준안은 위의 도표 비준 과정 ③의 해당 상임위 가결과정에서 논의중이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농연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쌀수매가 인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2명 의원중 13명이 쌀수매가 인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어려울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3년 3월 27일 현재 생산조정제 및 쌀수매가 인하 반대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전체국회의원 270명중 84명이다.

4. 한·칠레 FTA 국회 비준

현재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은 위의 도표 비준과정 ①의 과정, 정부 부서에서 안건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따른 대책으로 FTA이행특별법을 준비중이며,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과 FTA이행특별법이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FTA이행특별법이 FTA를 체결하기 위한 면파성 대책에 불과하며, 농업 개방과 축소를전제로 한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국회비준안과 FTA이행특별법 모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WTO국민연대에서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농연과 전농, WTO국민연대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23명 의원 중 5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총 국회의원 270명중 117명만이 서명에 동참한 상황이다.

5. 식품위생법개정안(수입축산물에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2002년 10월 29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위의 도표상 법개정과정 ②의 해당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농연]**